

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* 계약 당사자

-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,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.

* 계약 기간

-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.

* 계약 목적
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
*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
-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.
-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 (본인부담금)을 말일에 정산하여 수급자 (또는 보호자)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3일까지 청구서와 영수증을 우편발송한다.
- 청구 된 이용료는 당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현금납부, 계좌이체등으로 할 수 있다.
- 이용료 납입확인 영수증을 우편 발송하고 지연시 문자 및 전화로 독촉을 통보한다.
-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가 15%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
- 차상위계층 6% 또는 9%, 및 의료급여자는 6% 또는 7.5%, 기초생활수급자는 0%로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른 것이며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 (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).
-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.

❖ 월 이용료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(시행 : 2022. 01 .01) ❖

2021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

❖ 방문요양

(단위 : 원)
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금액		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
본인 부담금	일반 15%	228,105	202,755	194,310	178,470	153,195
	감경 9%	136,863	121,653	116,586	107,082	91,917
	감경 6%	91,242	81,102	77,724	71,388	61,278
	의료 7.5%	114,052	101,377	97,155	89,235	76,597
	의료 6%	91,242	81,102	77,724	71,388	61,278
	기초수급 0%	0	0	0	0	0

❖ 방문요양 1회당 수가표 ❖

(단위 : 원)

서비스 시간	금액	본인부담금					
		일반 15%	감경 9%	감경 6%	의료 7.5%	의료 6%	기초수급 0%
방문요양서비스 30분	14,750	2,212	1,327	885	1,106	885	0
방문요양서비스 60분	22,640	3,396	2,037	1,358	1,698	1,358	0
방문요양서비스 90분	30,370	4,555	2,733	1,822	2,277	1,822	0
방문요양서비스 120분	38,340	5,751	3,450	2,300	2,875	2,300	0
방문요양서비스 150분	43,570	6,535	3,921	2,614	3,267	2,614	0
방문요양서비스 180분	48,170	7,225	4,335	2,890	3,612	2,890	0
방문요양서비스 210분	52,400	7,860	4,716	3,144	3,930	3,144	0
방문요양서비스 240분	56,320	8,448	5,068	3,379	4,224	3,379	0

단)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 - 야간은 표준수가의 20%를 가산하고, 평일 오후 10시 이후
 익일 오전06시 이전 - 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%를 가산한다.

❖ 방문목욕 1회 (방문당) 수가표 ❖

(단위 : 원)

서비스 분류	금액	본인부담금					
		일반 15%	감경 9%	감경 6%	의료 7.5%	의료 6%	기초수급 0%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 목욕)	74,450	11,167	6,700	4,467	5,583	4,468	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 목욕)	68,030	10,204	6,122	4,081	5,102	4,029	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(60분 이상)	42,480	6,372	3,823	2,548	3,186	2,548	0

***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**

-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.

-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(가)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(나)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
- (다)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
- (라)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,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,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(가)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- (나)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- (다)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
(해외 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)
- (라)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- 계약의 해제 :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.

- (가)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
- (나)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- (다)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
- (라)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(마)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,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,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.